

경기청 끼임사고 예방 집중점검 상세 결과 ('26.5.11.~5.15.)

□ 점검결과 행정조치 내역

구 분	실시 사업장수 (개소)	위반	위반 없음	시정조치		사용중지		과태료		기타
				개소	건	개소	건	개소	원	
경기청 권역	215	206	9	206	962	13	18	61	81,190,000	-

□ 끼임사고 관련 주요 안전보건규칙 위반 내역

안전보건규칙	내용	내역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벨트 및 체인 등 부위에 덮개·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 미설치	-
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 운전위치 이탈 시 시동키 미분리	-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인터록 등) 임의해체· 미사용	-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교체·조정 등 작업 시 기계의 운전 미정지 ②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미설치 (또는 표지판 미설치)	-
제103조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프레스 또는 전단기 위험구역 덮개 등 방호조치 미실시	-
제192조 (비상정지장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
제88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절단·인발·압축 등 가공 기계 동력차단장치 미설치(또는 근접 거리 내 미설치)	-
제9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 발견 시 정비 미실시 사용	-

□ 주요 과태료조항 위반 내역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내역
제114조제1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사업장 내 저장·취급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보유 (또는 작업장 내 미게시)	-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사업장 내 저장·취급물질의 용기에 경고표지 미부착	-
제37조제1항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출입 금지표지, 고온 경고표지, 보호구 착용 지시표지 등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또는 외국어 미표기)	-
제93조제1항 (안전검사)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미실시	-
제29조제3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제114조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사업장 내 저장·취급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교육 미실시	-
제29조제1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제29조제2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제128조의2제2항 (휴게시설의 설치)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에 관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
제130조제1항 (특수건강진단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
제125조제1항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노출 작업장 대상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제95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사업장 내 보유 중인 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에 대해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대상기계 사용	-

2026년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2026년에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강제하며,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4대 핵심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 제도 전면 강화 및 과태료 신설 (2026년 6월 1일 시행)

- 기존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없었으나, 이제는 미실시 및 절차 위반이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주요 과태료 기준

- 위험성평가 미실시: 1,000만 원 이하
- 근로자 참여 의무 미이행 및 결과 미공유(교육·게시 등): 500만 원 이하
- 결과 기록 및 보존 의무 위반: 300만 원 이하

○ 적용 시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2. 재해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대외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 재해조사의 범위가 넓어지고, 내부적으로만 보관되던 조사보고서가 외부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조사 대상 확대

- 사망사고 등 기존 '중대재해'에 국한되지 않고,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상해재해 등)까지 조사대상이 확대됩니다. (단, 확대 조항은 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 재해부터 적용)

○ 보고서 공개 의무

-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의무화되며,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이후 대외적으로 공개됩니다. 경우에 따라 공소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될 수도 있어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평판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3.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 신설 (2026년 8월 1일 시행)

- 기업의 안전보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검증 성격의 공시 의무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 **대상**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부터 즉시 적용되며, 300인 이상 등은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의무 공시 항목**
 - ① 안전보건 관리 체제, ②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③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당해 연도 계획, ④ 안전보건 투자 현황, ⑤ 재해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 계획
- **제재**
 - 공시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참여 보장 (2026년 8월 1일 시행)

- 근로자의 현장 참여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위촉 의무화**
 -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반드시 위촉해야 합니다.
- **감독 참여 보장**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현장 감독을 나올 때,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